성주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3조 제1항)

다.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안 제3조제2항)

라.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안 제5조)

마.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성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나.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성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